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호 8876 제안연월일: 2025. 3.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3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19	김예지	2024. 9. 24.	2024. 11. 14.
	2206362	김원이	2024. 12. 10.	2025. 1. 14.
	2206740	서미화	2024. 12. 19.	2025. 2. 18.

- 나.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 2. 19.)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422회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5. 2. 21.)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표시한 화장품도 그 외의 다른 상세 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 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 가 있으며,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도 정확한 제품 정보를 인지하여 화장 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청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하여 화장품을 안전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 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씩 성장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해외직구 온라인몰을 이용한 화장품의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유해성 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하여 위해정보 게시, 반입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의 지정,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규정이 마 련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준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유통단계부터 위해화장품의 반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화장품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 나.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 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을 정의하고,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3호, 제23조의2제2항,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 신설).
- 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 장품을 말한다.

제1장에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조의3(화장품의 날) ①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 을 화장품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재사항을"을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시각·청 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로 하 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의4(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 자의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구매·사용실태를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물품(직접구매 해외화장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2항을"을 "제2항, 제28조의4제3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의 개

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1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
	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
	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
	<u>장품을 말한다.</u>
<u><신 설></u>	제2조의3(화장품의 날) ①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
	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u> 정한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
	장품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
	<u>런 법인·단체의 활동을 지원</u>
	<u>할 수 있다.</u>
	③ 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화 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 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 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

<신 설>

④ (생략)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①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③ -----<u>기재사항의 전</u> 부 <u>또는 일부를</u>-----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 는 음성 ·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 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① (현행과 같음)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공 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

령으로 정한다. <<u>신</u> 설>

<신 설>

제28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5조제 2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 외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 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구매·사용실태, 위

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화장 품의 구매·사용실태를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 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 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 구매 해외화장품만 해당한다) 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제37조(벌칙) ① 제3조의6, 제4조의2제1항, 제9조,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제37조(벌칙) ①	
<u>제2항, 제28조의4제3항을</u> -	
② (현행과 같음)	